

대통령훈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
연 월 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해외재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이 되어 권한을 행사토록 되어 있으나, 현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는 해외재난에 대한 실무반의 임무, 편성기준, 재난상황의 보고 등 세부적인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추가 규정하고자 하며, 동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외교부에서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할 경우를 고려하여 훈령 내 ‘행정안전부’로 한정하는 문구 삭제 및 수정(안 제1조, 제5조, 제8조, 제14조)
- 나. 중앙대책본부 편성기준에 “해외재난의 경우”를 추가(안 제7조, 별표6)
- 다. 해외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른 신속대응팀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19조제3항)
- 라. 해외재난상황의 보고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6조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토록 규정 신설(안 제24조제2항)
- 마. 중앙대책본부 운영 및 편성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 발령 규정 신설(안 제27조제1항)
- 바.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휴무 규정 신설(안 제27조제2항)
- 사. 비상근무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대체

휴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27조제3항)

아. 중앙대책본부 편성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함(안 별표3, 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하여 행정안전부에”를 “위하여”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부처의”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외재난의 경우: 별표 6

제8조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를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부처”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를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부처”로 한다.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외재난의 경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속대응팀을 파견할 수 있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외재난의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비상근무) ①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부처에서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부분은 해당 법률의 시행일(2021.1.16.)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9.5.27.>

실무반의 임무(제3조제1항제7호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	1)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팀	가) 기상정보 등 상황 수집 및 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승인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중앙대책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화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자) 부처 및 관계 기관의 대처계획과 조치사항 파악 · 보고
	2) 상황관리팀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 국회 관련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4) 가뭄: 가뭄 피해 및 저수율, 용수공급상황 등 파악 (5) 폭염: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6) 한파: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접경지역 댐 홍수관리 및 4대강 보 현황 관리 자)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상황 등 관리 차) 텔레비전 방송 모니터링 카) 여론동향, 미답사례 등 확인
	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회의 및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재난관리책임기관 비상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 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나. 협업기반	1) 긴급생활안전지원반	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조정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

	화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이재민 구호비용(재난지원금, 재해구호기금)사용 현황 파악 바)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사)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업무 아) 부처별 긴급생활안정 지원정책 확인 및 시행
2) 재난현장환경정비반	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쓰레기를 임시로 모아둘 수 있는 곳) 설치·운영지도·확인 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 복구현황 파악
3) 긴급통신지원반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전력시설 파괴로 인한 통신시설 전력공급대책 마련 지원 다) 통신기반시설 긴급복구 지원 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 복구현황 파악 마)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 교육 등 시스템 운영 지원
4) 시설피해응급복구반	가) 공공·사유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 및 자재 등 지원 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 응급복구 현황 파악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시설 등) 피해상황 나) 시설 긴급복구 상황 파악 다) 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

	원 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 복구현황 파악 마) 인명구조현장, 이재민 수용시설의 에너지 공급 지원 바) 에너지 단절시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실시
6) 재난수습홍보반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라디오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 및 경보 실시사항 등 전파 다)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보담당관 관리 및 운영 마) 재난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바)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사)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 지원) 아)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자)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차)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카) 현장과 지역대책본부 및 수습본부 재난수습홍보 반과의 연락망 구축을 통한 공유·협조체계 구축
7)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 지원반	가) 재난관리자원(장비, 물자 및 자재) 사전점검, 재난관리자원 공동 활용 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 현행화 및 운영 나) 피해지역의 재난관리자원 부족현황 파악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지원 응원 라) 다른 지역의 장비·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자재로 활용하도록 지원 마)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 현황 파악

	바)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파악 및 관리 사) 자원봉사활동 조정 지원 아)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8) 교통대책반	가) 재난발생지역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지역 파악 및 우회도로 개설 지원 라) 육상,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마) 지하철·철도 운행 중단시 대체수단 투입, 증편 · 연장 운영 현황 파악
9) 의료·방역 서비스반	가)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 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재난지역 방역 실시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 · 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 성·운영 사) 응급의료 지원체계 신속 가동
10) 사회질서 유지반	가)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나)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다)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 지 및 안전관리 지원
11) 수색, 구 조·구급반	가) 재난지역(육상·해상) 수색·구조·구급 상황파 악 및 지원 나)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시·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및 인명구조현황 파악 다) 재난현장의 특성 및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화학물질 유출 등으로 인한 접근곤란 지역 인명 구조·대피계획 확인 및 현황 파악
다.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1) 중앙대책본부와 수습본부 간 연락관 업무수행 2) 피해현황 및 대처사항 파악 3) 중앙대책본부 차원의 협조필요사항 파악 4) 협업기능반 업무 보조

2. 사회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 총괄반	1) 상황관리 총괄팀	가) 재난상황대처보고서 작성·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대통령·국무총리 및 중앙대책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2) 수습상황 파악팀	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수습본부, 지역대책본부, 중앙통제단 및 지역통제단 등 조치사항 파악 라)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 기관 대처상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	1) 긴급생활안전지원반	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조정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이재민 구호비용(재난지원금, 재해구호기금)사용 현황 파악 바)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사)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업무

	아) 부처별 긴급생활안정 지원정책 확인 및 시행
2) 재난현장환경정비반	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쓰레기를 임시로 모아둘 수 있는 곳) 설치·운영지도·확인 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 복구현황 파악
3) 긴급통신지원반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전력시설 파괴로 인한 통신시설 전력공급대책 마련 지원 다) 통신기반시설 긴급복구 지원 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 복구현황 파악 마)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 교육 등 시스템 운영 지원
4) 시설피해응급복구반	가) 공공·사유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 및 자재 등 지원 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 응급복구 현황 파악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시설 등) 피해상황 나) 시설 긴급복구 상황 파악 다) 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 복구현황 파악 마) 인명구조현장, 이재민 수용시설의 에너지 공급 지원 바) 에너지 단절시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실시

6) 재난수습홍보반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라디오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 및 경보 실시사항 등 전파 다)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보담당관 관리 및 운영 마) 재난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바)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사)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 지원) 아)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자)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차)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카) 현장과 지역대책본부 및 수습본부 재난수습홍보반과의 연락망 구축을 통한 공유·협조체계 구축
7)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 지원반	가) 재난관리자원(장비, 물자 및 자재) 사전점검, 재난관리자원 공동 활용 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 현행화 및 운영 나) 피해지역의 재난관리자원 부족현황 파악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지원 응원 라) 다른 지역의 장비·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자재로 활용하도록 지원 마)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 현황 파악 바)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파악 및 관리 사) 자원봉사활동 조정 지원 아)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8) 교통대책반	가) 재난발생지역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지역 파악 및 우회도로 개설 지원 라) 육상,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마) 지하철·철도 운행 중단시 대체수단 투입, 증편·연장 운영 현황 파악
9) 의료·방역 서비스반	가)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 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재난지역 방역 실시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사) 응급의료 지원체계 신속 가동
10) 사회질서 유지반	가)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나)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다)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지원
11) 수색, 구조·구급반	가) 재난지역(육상·해상) 수색·구조·구급 상황파악 및 지원 나)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시·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및 인명구조현황 파악 등 다) 재난현장의 특성 및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화학물질 유출 등으로 인한 접근곤란 지역 인명구조·대피계획 확인 및 현황 파악
다.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1) 중앙대책본부와 수습본부 간 연락관 업무수행 2) 피해현황 및 대처사항 파악

	3) 중앙대책본부 차원의 협조필요사항 파악 4) 협업기능반 업무 보조
라. 현장지원반	수습본부, 지역대책본부 및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3. 해외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 총괄반	1) 상황관리총괄팀	가) 실무반 총괄 및 업무 조정 나) 일일 상황보고서 및 상황일지 작성·보고 및 배포 다) 대통령·국무총리·중대본 본부장 지시사항 이행현황 관리 라) 관계 부처 및 기관과의 협업 총괄 조정 마) 여행경보 및 위기경보 단계 조정 바) 유사 해외재난 사례 자료 수집·배포·전파(1) 사) 국가위기관리센터 보고 아) 국회 대응 자)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관리 차) 기타 상황관리 총괄 관련 업무
	2) 중대본회의지원팀	가) 상황판단회의 운용 관련 업무 나) 중대본 회의 자료 취합 및 배포(회의결과정리 포함) 다) 중대본 회의 참석자 관리 라) 중대본 회의 관련 시설·장비(화상회의 포함) 관리 마) 실무회의 운용 관련 업무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운용·관리 사) 기타 중대본에서 진행되는 회의 관련 업무
	3) 국제협력팀	가) 재난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나) 재난 발생 주변국(재난 발생국 제외)과의 협력 다) 재난 발생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해외긴급구호대(해외긴급구호법) 파견 라) 주한공관과의 협력

		마) 유사 해외재난 사례 자료 수집·배포·전파(2) 바) 지원 받을 수 있는 해외의 대응자산 파악(2) 사) 재난 발생국 잔류 우리국민 보호대책 강구·시행 아) 통·번역 지원 자) 기타 국제협력 관련 업무
	4) 홍보팀	가) 보도자료 작성·배포 나) 언론사 인터뷰 및 응대 다) 브리핑 운영 라) SNS 및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아) 오보 및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바) 취재지원센터 운영 사) 기타 언론·홍보 관련 업무
	5) 운영지원팀	가) 중대본 운영 관련 행정·서무·예산(예산 확보 포함) 나) 중대본 운영 관련 시설·장비 지원 및 관리 다) 상황근무자 및 관계기관 파견 근무자 관련 행정·서무·예산 업무 라) 전자문서관리시스템·외교통신·위성통신 등 각종 보고·통신·배포 시스템(정보통신체계 및 통신연결망) 관리
나. 현장 지원반	1) 현장 비상대책반[현장지휘본부]지원팀	가) 현장 비상대책반[현장지휘본부] 총괄 지휘(재난 발생국과의 협업 총괄 포함) 나) 중대본 차원의 현장 비상대책반[현장지휘본부] 인력·장비 지원 다) 신속대응팀 파견 관리 업무 라) 재난긴급대응단 파견 관련 업무 마) 수습지원단 파견 관련 업무 바) 119 국제구조대 파견 관련 업무 사) 기타 현장 비상대책반[현장지휘본부] 지원 관련 업무
다. 협업기능반	1) 관계 부처 협업	가) 관계 부처 연락관팀 운영(복무관리 포함)

지원팀	나) 재난관리책임기관 비상근무자 파견 요청 다) 부처 및 관계 기관의 대처계획과 조치사항 파악 · 보고 라) 유관 부처 문의 대응 마) 기타 관계 부처 실무 협업 사항 관련 업무
2) 수색·구조·구호 지원팀	가) 재난 발생국 수색·구조·구급 활동 관련 국내 가용자산 ·인력 지원 나) 실종자에 대한 인터폴 황색수배(실종) 발령 업무 다) 재난 발생국 및 주변국과의 공조 수색 지원 업무 라) 해외긴급구호대와의 협업 관련 업무(1) 마) 기타 해외재난 피해 재외국민 수색·구조·구호 관련 업무
3) 의료·방역 지원팀	가) 재난 발생국 의료·방역 활동 관련 국내 가용자산 ·인력 지원 나) 해외긴급구호대와의 협업 관련 업무(2) 다) 피해자 귀국 후 의료 지원 라) 감염병 피해자 귀국에 따른 방역책 강구·시행 마) 기타 해외재난 피해 재외국민에 대한 의료·방역 지원 업무
4) 이송·귀국 지원팀	가) 피해자 이송·귀국 지원 나) 재난 발생국 재외국민 이송·귀국 지원 다) 정부 임차 특별전세기 운용 관련 업무 다) 국적 항공사 및 선사와의 이송·귀국 관련 협업 라) 재난 발생국 재외국민 이송·귀국 관련주요국 및 관련국과의 협업 마) 기타 해외재난 피해 재외국민 이송·귀국 지원 업무
5) 신원 확인팀	가) 사망자 신원 확인 나) 실종자 신원 확인 자료 확보 다) 사망자 국내 가족 통보 라) 기타 해외재난으로 사망·실종 된 재외국민 확인 관련

	업무
6) 가족 지원팀	가) 피해자 가족 출국·귀국 지원 나) 국내 체류 피해자 가족과의 소통 및 지원(가족 대상 브리핑 포함) 다) 장례·운구 절차 지원 라) 재난 발생국의 외국인 피해자 및 유족 지원제도 파악 마) 심리상담 및 법률자문 지원 바) 국내 체류 가족 및 연고자에게 재난 발생국 재외 국민에 대한 소재 및 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 사) 기타 해외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 관련 업무
7) 재난자원 지원팀	가) 가용 정부 보유 해외재난 대응자산 파악 나) 가용 국내 민간 보유 해외재난 대응자산 파악 다) 지원 받을 수 있는 해외의 대응자산 파악(1) 라) 기타 재난자원 지원 관련 업무

[별표 3] <개정 2019.5.27.>

자연재난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편성기준(제7조제1항제1호 관련)

1. 호우·태풍 시 편성기준

가. 비상 1단계

본 부 장	행정안전부장관		
차 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총괄조정관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대 변 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통 제 관	호우·태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부 대 변 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담 당 관	호우·태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근 무 인 원	총 16+α명		
실 무 반	실무반장 (1명)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담당관	
	1) 상황관리 총괄반(15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팀(7명)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공무원 2명 · 경찰청 및 기상청 파견 공무원 각 1명 ·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파견 직원 각 1명
		나) 상황관리팀(6명)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공무원 6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2명)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업무 담당 공무원 2명

2) 협업기능 반(a)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행정안전부 긴급생활 안정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 파견 공무원
	다) 긴급 통신지원반	• 행정안전부 긴급 통신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파견 공무원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행정안전부 시설피해 응급복구 업무 담당 공무원 •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파견 공무원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산업통상자원부 파견 공무원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행정안전부 재난수습 홍보업무 담당 공무원
	사)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 지원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자원 관리 및 자원봉사활동 업무 담당 공무원
	아) 교통대책반	• 국토교통부 파견 공무원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복지부 파견 공무원
	차) 사회질서 유지반	• 경찰청 파견 공무원
	카) 수색, 구조·구급반	•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파견 공무원

나. 비상 2단계

본 부 장	행정안전부장관		
차 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총괄조정관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대 변 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통 제 관	호우·태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부 대 변 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담 당 관	호우·태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근 무 인 원	총 17+ α + β 명		
실 무 반	실무반장 (1명)	·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1) 상황관리 총괄반(16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팀(7명)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공무원 2명 · 경찰청 및 기상청 파견 공무원 각 1명 ·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파견 직원 각 1명
		나) 상황관리팀(6명)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공무원 6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3명)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업무 담당 공무원 3명
	2) 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행정안전부 긴급생활 안정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 파견 공무원

	다) 긴급 통신지원반	• 행정안전부 긴급 통신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파견 공무원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행정안전부 시설피해 응급복구 업무 담당 공무원 •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파견 공무원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산업통상자원부 파견 공무원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행정안전부 재난수습 홍보업무 담당 공무원
	사)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지원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자원 관리 및 자원봉사활동 업무 담당 공무원
	아) 교통대책반	• 국토교통부 파견 공무원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복지부 파견 공무원
	차) 사회질서 유지반	• 경찰청 파견 공무원
	카) 수색, 구조·구급반	•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파견 공무원
	3)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기상청 등 중앙행정기관 파견 공무원 •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전력공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	--	--

다. 비상 3단계

구 분	행정안전부장관이 본부장인 경우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경우
본 부 장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차 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총괄조정관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대 변 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및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공무원
통 제 관	호우·태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부 대 변 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공무원
담 당 관	호우·태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호우·태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근 무 인 원	총 25+ α + β 명	

실무반	실무반장 (1명)	·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1) 상황관리 총괄반(24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팀(7명)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공무원 2명 · 경찰청 및 기상청 파견 공무원 각 1명 ·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파견 직원 각 1명
		나) 상황관리팀(12명)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공무원 1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5명)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업무 담당 공무원 5명
	2) 협업기능반(a)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행정안전부 긴급생활 안정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 파견 공무원
		다) 긴급 통신지원반	· 행정안전부 긴급 통신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파견 공무원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행정안전부 시설피해 응급복구 업무 담당 공무원 ·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파견 공무원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산업통상자원부 파견 공무원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행정안전부 재난수습 홍보업무 담당 공무원
	사)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 지원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자원 관리 및 자원봉사활동 업무 담당 공무원
	아) 교통대책반	• 국토교통부 파견 공무원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복지부 파견 공무원
	차) 사회질서 유지반	• 경찰청 파견 공무원
	카) 수색, 구조·구급반	•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파견 공무원
	3)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기상청 등 중앙행정기관 파견 공무원 •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전력공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2. 대설 시 편성기준

가. 비상 1단계

본 부 장	행정안전부장관
차 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총괄조정관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대 변 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통 제 관	대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부 대 변 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담 당 관	대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근 무 인 원	총 15+a명		
실 무 반	실무반장 (1명)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담당관	
	1) 상황관리 총괄반(14명)	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팀(6명)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공무원 2명 · 경찰청 및 기상청 파견 공무원 각 1명 · 한국도로공사 및 국립공원공단 파견 직원 각 1명
		나) 상황관리팀(6명)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공무원 6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2명)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업무 담당 공무원 2명
	2) 협업기능반(a)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행정안전부 긴급생활 안정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 파견 공무원
		다) 긴급 통신지원반	· 행정안전부 긴급 통신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파견 공무원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행정안전부 시설피해 응급복구 업무 담당 공무원 •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파견 공무원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 복구반	• 산업통상자원부 파견 공무원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행정안전부 재난수습 홍보업무 담당 공무원
	사)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 지원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자원 관리 및 자원봉사활동 업무 담당 공무원
	아) 교통대책반	• 국토교통부 파견 공무원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복지부 파견 공무원
	차) 사회질서 유지반	• 경찰청 파견 공무원
	카) 수색, 구조·구급반	•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파견 공무원

나. 비상 2단계

본 부 장	행정안전부장관
차 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총괄조정관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대 변 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통 제 관	대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부 대 변 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행

	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담 당 관	대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근 무 인 원	총 16+α+β명	
실 무 반	실무반장 (1명)	·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1) 상황관리 총괄반(15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팀(6명)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공무원 2명 · 경찰청 및 기상청 파견 공무원 각 1명 · 한국도로공사 및 국립공원공단 파견 직원 각 1명
		나) 상황관리팀(6명)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공무원 6명
	2) 협업기능반(α)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3명)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업무 담당 공무원 3명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행정안전부 긴급생활 안정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 파견 공무원
		다) 긴급 통신지원반
		· 행정안전부 긴급 통신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파견 공무원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행정안전부 시설피해 응급복구 업무 담당 공무원 ·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파견 공무원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
		· 산업통상자원부 파견 공무원

		복구반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행정안전부 재난수습 홍보업무 담당 공무원
		사)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 지원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자원 관리 및 자원봉사 업무 담당 공무원
		아) 교통대책반	• 국토교통부 파견 공무원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복지부 파견 공무원
		차) 사회질서 유지반	• 경찰청 파견 공무원
		카) 수색, 구조·구급반	•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파견 공무원
		3)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기상청 등 중앙행정기관 파견 공무원 •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전력공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다. 비상 3단계

구 분	행정안전부장관이 본부장인 경우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경우
본 부 장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차 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총괄조정관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대 변 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및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공무원
통 제 관	대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부 대 변 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공무원
담 당 관	대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대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근 무 인 원	총 24+α+β명		
실 무 반	실무반장 (1명)	·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1) 상황관리 총괄반(23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팀(6명)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공무원 2명 · 경찰청 및 기상청 파견 공무원 각 1명 · 한국도로공사 및 국립공원공단 파견 직원 각 1명
		나) 상황관리팀(12명)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공무원 12명
		다) 상황관리총괄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업무 담당 공

	및 상황분석평가팀(5명)	무원 5명
2) 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행정안전부 긴급생활 안정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 파견 공무원
	다) 긴급 통신지원반	• 행정안전부 긴급 통신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파견 공무원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행정안전부 시설피해 응급복구 업무 담당 공무원 •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파견 공무원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산업통상자원부 파견 공무원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행정안전부 재난수습 홍보업무 담당 공무원
	사)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지원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자원 관리 및 자원봉사활동 업무 담당 공무원
	아) 교통대책반	• 국토교통부 파견 공무원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복지부 파견 공무원
	차) 사회질서 유지반	• 경찰청 파견 공무원
	카) 수색, 구조·구급반	•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파견 공무원
3)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

	반(β)	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기상청 등 중앙행정기관 파견 공무원 •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전력공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	------	--

3.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시 편성기준

가. 비상 1단계

본 부 장	행정안전부장관		
차 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총괄조정관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대 변 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통 제 관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부 대 변 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담 당 관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근 무 인 원	총 13+α명		
실 무 반	실무반장 (1명)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담당관	
	1) 상황관리 총괄반(12	가) 재난정보·수 집·분석 및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공무원 2명

명)	전파팀(4명)	• 경찰청 및 기상청 파견 공무원 각 1명
	나) 상황관리팀(6명)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공무원 6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2명)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업무 담당 공무원 2명
2) 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행정안전부 긴급생활 안정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 파견 공무원
	다) 긴급 통신지원반	• 행정안전부 긴급 통신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파견 공무원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행정안전부 시설피해 응급복구 업무 담당 공무원 •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파견 공무원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산업통상자원부 파견 공무원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행정안전부 재난수습 홍보업무 담당 공무원
	사)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 지원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자원 관리 및 자원봉사활동 업무 담당 공무원
	아) 교통대책반	• 국토교통부 파견 공무원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복지부 파견 공무원

		차) 사회질서 유 지반	• 경찰청 파견 공무원
		카) 수색, 구조· 구급반	•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파견 공무원

나. 비상 2단계

본 부 장	행정안전부장관		
차 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총괄조정관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대 변 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통 제 관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부 대 변 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담 당 관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근 무 인 원	총 14+α+β명		
실 무 반	실무반장 (1명)	•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1) 상황관리 총괄반(13 명)	가) 재난정보 수 집·분석 및 전파팀(4명)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공 무원 2명 • 경찰청 및 기상청 파견 공무원 각 1 명
		나) 상황관리팀(6 명)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공무 원 6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업무 담당 공 무원 3명

	가팀(3명)	
2) 협업기능 반(a)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행정안전부 긴급생활 안정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 파견 공무원
	다) 긴급 통신지원반	• 행정안전부 긴급 통신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파견 공무원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행정안전부 시설피해 응급복구 업무 담당 공무원 •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파견 공무원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산업통상자원부 파견 공무원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행정안전부 재난수습 홍보업무 담당 공무원
	사)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지원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자원 관리 및 자원봉사활동 업무 담당 공무원
	아) 교통대책반	• 국토교통부 파견 공무원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복지부 파견 공무원
	차) 사회질서 유지반	• 경찰청 파견 공무원
	카) 수색, 구조·구급반	•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파견 공무원
3)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

	반(β)	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기상청 등 중앙행정기관 파견 공무원 •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및 지역 지하철공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	------	---

다. 비상 3단계

구 분	행정안전부장관이 본부장인 경우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경우
본 부 장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차 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총괄조정관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대 변 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및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공무원
통 제 관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부 대 변 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중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고위공무

	에서 그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공무원
담 당 관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근 무 인 원	총 22+ α + β 명	
실 무 반	실무반장 (1명)	·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1) 상황관리 총괄반(21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팀(4명)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공무원 2명
		· 경찰청 및 기상청 파견 공무원 각 1명
		나) 상황관리팀(12명)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공무원 1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5명)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업무 담당 공무원 5명
2) 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행정안전부 긴급생활 안정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 파견 공무원
	다) 긴급 통신지원반	· 행정안전부 긴급 통신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파견 공무원
		· 행정안전부 시설피해 응급복구 업무 담당 공무원
		·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파견 공무원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 복구반		• 산업통상자원부 파견 공무원
바) 재난수습 홍보 반		• 행정안전부 재난수습 홍보업무 담당 공무원
사)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 지원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자원 관리 및 자원봉사활동 업무 담당 공무원
아) 교통대책반		• 국토교통부 파견 공무원
자) 의료·방역서 비스 지원반		• 보건복지부 파견 공무원
차) 사회질서 유 지반		• 경찰청 파견 공무원
카) 수색, 구조· 구급반		•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파견 공무원
3)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 반(β)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기상청 등 중앙행정기관 파견 공무원 •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및 지역 지하철공사 등 재난관

		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	--	-------------

4. 가뭄 시 편성기준

가. 비상 1단계

본 부 장	행정안전부장관		
차 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총괄조정관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대 변 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통 제 관	가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부 대 변 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담 당 관	가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근 무 인 원	총 14+a명		
실 무 반	실무반장 (1명)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담당관	
	1) 상황관리 총괄반(13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팀(7명)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공무원 2명 ·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및 기상청 파견 공무원 각 1명 ·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 파견 직원 각 1명
		나) 상황관리팀(6명)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공무원 6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2명)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업무 담당 공무원 2명
	2) 협업기능	가) 긴급생활 안	· 행정안전부 긴급생활 안정지원 업

	반(a)	정지원반	무 담당 공무원
		나)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행정안전부 시설피해 응급복구 업무 담당 공무원 •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 파견 공무원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파견 직원
		다) 재난수습 홍보반	• 행정안전부 재난수습 홍보업무 담당 공무원
		라)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 지원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자원 관리 및 자원봉사활동 업무 담당 공무원
		마) 사회질서 유지반	• 경찰청 파견 공무원

나. 비상 2단계

본 부 장	행정안전부장관	
차 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총괄조정관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대 변 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통 제 관	가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부 대 변 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담 당 관	가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근 무 인 원	총 17+α+β명	
실 무 반	실무반장 (1명)	•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1) 상황관리 총괄반(16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팀(7명)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공무원 2명 •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및 기상청 파견 공무원 각 1명 •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 파견 직원 각 1명
	나) 상황관리팀(6명)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공무원 6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3명)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업무 담당 공무원 3명
2) 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행정안전부 긴급생활 안정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나)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행정안전부 시설피해 응급복구 업무 담당 공무원 •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 파견 공무원 •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 파견 직원
	다) 재난수습 홍보반	• 행정안전부 재난수습 홍보업무 담당 공무원
	라)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지원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자원 관리 및 자원봉사활동 업무 담당 공무원
	마) 사회질서 유지반	• 경찰청 파견 공무원
3)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		•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등 중앙행

		정기관 파견 공무원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	--	--

다. 비상 3단계

구 분	행정안전부장관이 본부장인 경우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경우
본 부 장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차 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총괄조정관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대 변 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및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공무원
통 제 관	가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부 대 변 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공무원
담 당 관	가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가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근 무 인 원	총 24+ α + β 명	
실 무 반	실무반장	·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과장급

(1명)	공무원	
1) 상황관리 총괄반(23명)	가) 재난정보 수집 · 분석 및 전파팀(7명)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공무원 2명 ·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및 기상청 파견 공무원 각 1명 ·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 파견 직원 각 1명
	나) 상황관리팀(12명)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공무원 1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4명)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업무 담당 공무원 4명
2) 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행정안전부 긴급생활 안정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나)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행정안전부 시설피해 응급복구 업무 담당 공무원 ·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 파견 공무원 ·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 파견 직원
	다) 재난수습 홍보반	· 행정안전부 재난수습 홍보업무 담당 공무원
	라)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 지원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자원 관리 및 자원봉사활동 업무 담당 공무원
	마) 사회질서 유지반	· 경찰청 파견 공무원
3)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		·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등 중앙행

		정기관 파견 공무원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	--	--

5. 폭염 시 편성기준

가. 비상 1단계

본 부 장	행정안전부장관		
차 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총괄조정관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대 변 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통 제 관	폭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부 대 변 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담 당 관	폭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근 무 인 원	총 14+a명		
실 무 반	실무반장 (1명)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담당관	
	1) 상황관리 총괄반(13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팀(5명)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공무원 2명 · 소방청 및 기상청 파견 공무원 각 1명 · 국립공원공단 파견 직원 1명
		나) 상황관리팀(6명)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공무원 6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2명)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업무 담당 공무원 2명

	2) 협업기능 반(a)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행정안전부 긴급생활 안정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부 파견 공무원
		다) 긴급 통신지원반	• 행정안전부 긴급 통신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행정안전부 시설피해 응급복구 업무 담당 공무원 •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파견 공무원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산업통상자원부 파견 공무원
		바) 재난수습홍보반	• 행정안전부 재난수습 홍보업무 담당 공무원
		사)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지원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자원 관리 및 자원봉사활동 업무 담당 공무원
		아) 교통대책반	• 국토교통부 및 경찰청 파견 공무원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보건복지부 파견 공무원
		차) 사회질서 유지반	• 경찰청 파견 공무원
		카) 수색, 구조·구급반	• 소방청 파견 공무원

나. 비상 2단계

본 부 장	행정안전부장관
차 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총괄조정관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대 변 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통 제 관	폭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부 대 변 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담 당 관	폭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근 무 인 원	총 15+α+β명		
실 무 반	실무반장 (1명)	·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1) 상황관리 총괄반(14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팀(5명)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공무원 2명 · 소방청 및 기상청 파견 공무원 각 1명 · 국립공원공단 파견 직원 1명
		나) 상황관리팀(6명)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공무원 6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3명)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업무 담당 공무원 3명
	2) 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행정안전부 긴급생활 안정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부 파견 공무원
		다) 긴급 통신지원반	· 행정안전부 긴급 통신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라) 시설피해	· 행정안전부 시설피해 응급복구 업무 담당 공무원

		응급복구반	무 담당 공무원 •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파견 공무원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 복구반	• 산업통상자원부 파견 공무원
		바) 재난수습홍보 반	• 행정안전부 재난수습 홍보업무 담당 공무원
		사)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 지원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자원 관리 및 자원봉사활동 업무 담당 공무원
		아) 교통대책반	• 국토교통부 및 경찰청 파견 공무원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보건복지부 파견 공무원
		차) 사회질서 유 지반	• 경찰청 파견 공무원
		카) 수색, 구조· 구급반	• 소방청 파견 공무원
	3)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 반(β)		•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행 정기관 파견 공무원 •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 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 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재 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다. 비상 3단계

구 분	행정안전부장관이 본부장인 경우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경우
본 부 장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차 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총괄조정관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대 변 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및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공무원
통 제 관	폭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부 대 변 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공무원
담 당 관	폭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폭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근 무 인 원	총 21+α+β명		
실 무 반	실무반장 (1명)	·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1) 상황관리 총괄반(20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팀(5명)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공무원 2명 · 소방청 및 기상청 파견 공무원 각 1명 · 국립공원공단 파견 직원 1명
		나) 상황관리팀(12명)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공무원 12명
		다) 상황관리총괄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업무 담당 공

	및 상황분석평가팀(3명)	무원 3명
2) 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행정안전부 긴급생활 안정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나) 재난현장환경정비반	• 환경부 파견 공무원
	다) 긴급통신지원반	• 행정안전부 긴급통신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라) 시설피해응급복구반	• 행정안전부 시설피해 응급복구 업무 담당 공무원 •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파견 공무원
	마) 에너지 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산업통상자원부 파견 공무원
	바) 재난수습홍보반	• 행정안전부 재난수습 홍보업무 담당 공무원
	사)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지원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자원 관리 및 자원봉사활동 업무 담당 공무원
	아) 교통대책반	• 국토교통부 및 경찰청 파견 공무원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복지부 파견 공무원
	차) 사회질서유지반	• 경찰청 파견 공무원
	카) 수색, 구조·구급반	• 소방청 파견 공무원
3)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		• 교육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등 중앙행정기관 파견 공무원 ·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	--	--

6. 한파 시 편성기준

가. 비상 1단계

본 부 장	행정안전부장관		
차 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총괄조정관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대 변 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통 제 관	한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부 대 변 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담 당 관	한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근 무 인 원	총 14+a명		
실 무 반	실무반장 (1명)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담당관	
	1) 상황관리 총괄반(13명)	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팀(5명)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공무원 2명 · 소방청 및 기상청 파견 공무원 각 1명

		• 국립공원공단 파견 직원 1명
	나) 상황관리팀(6명)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공무원 6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2명)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업무 담당 공무원 2명
2) 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행정안전부 긴급생활 안정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나) 긴급 통신지원반	• 행정안전부 긴급 통신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파견 공무원
	다)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행정안전부 시설피해 응급복구 업무 담당 공무원 •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파견 공무원
	라)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산업통상자원부 파견 공무원
	마) 재난수습 홍보반	• 행정안전부 재난수습 홍보업무 담당 공무원
	바)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 지원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자원 관리 및 자원봉사활동 업무 담당 공무원
	사) 교통대책반	• 국토교통부 파견 공무원
	아)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복지부 파견 공무원
	자) 사회질서 유	• 경찰청 파견 공무원

		지반	
		차) 수색, 구조·구급반	·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파견 공무원

나. 비상 2단계

본 부 장	행정안전부장관		
차 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총괄조정관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대 변 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통 제 관	한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부 대 변 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담 당 관	한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근 무 인 원	총 15+α+β명		
실 무 반	실무반장 (1명)	·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1) 상황관리 총괄반(14명)	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팀(5명)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공무원 2명 · 소방청 및 기상청 파견 공무원 각 1명 · 국립공원공단 파견 직원 1명
		나) 상황관리팀(6명)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공무원 6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3명)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업무 담당 공무원 3명
	2) 협업기능	가) 긴급생활 안	· 행정안전부 긴급생활 안정지원 업

반(α)	정지원반	무 담당 공무원
	나) 긴급 통신지원반	• 행정안전부 긴급 통신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파견 공무원
	다)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행정안전부 시설피해 응급복구 업무 담당 공무원 •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파견 공무원
	라)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 복구반	• 산업통상자원부 파견 공무원
	마) 재난수습 홍보반	• 행정안전부 재난수습 홍보업무 담당 공무원
	바)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 지원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자원 관리 및 자원봉사활동 업무 담당 공무원
	사) 교통대책반	• 국토교통부 파견 공무원
	아)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복지부 파견 공무원
	자) 사회질서 유지반	• 경찰청 파견 공무원
	차) 수색, 구조·구급반	•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파견 공무원
3)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	

		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등 중앙행정기관 파견 공무원 •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국립공원공단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	--	---

다. 비상 3단계

구 분	행정안전부장관이 본부장인 경우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경우
본 부 장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차 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총괄조정관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대 변 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및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공무원
통 제 관	한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부 대 변 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공무원
담 당 관	한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한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근 무 인 원	총 23+ α + β 명	

실 반	무	실무반장 (1명)	·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1) 상황관리 총괄반(22 명)	가) 재난정보·수 집·분석 및 전 파팀(5명)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공 무원 2명 · 소방청 및 기상청 파견 공무원 각 1명 · 국립공원공단 파견 직원 1명
			나) 상황관리팀(12 명)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공무 원 1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 가팀(5명)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업무 담당 공 무원 5명
		2) 협업기능 반(α)	가) 긴급생활 안 정지원반	· 행정안전부 긴급생활 안정지원 업 무 담당 공무원
			나) 긴급 통신지 원반	· 행정안전부 긴급 통신지원 업무 담 당 공무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 원회 파견 공무원
			다) 시설피해 응 급복구반	· 행정안전부 시설피해 응급복구 업 무 담당 공무원 ·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파견 공 무원
			라)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 복구반	· 산업통상자원부 파견 공무원
			마) 재난수습 홍 보반	· 행정안전부 재난수습 홍보업무 담 당 공무원
			바)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자원 관리 및 자원봉사활동 담당 공무원

		지원반	
		사) 교통대책반	• 국토교통부 파견 공무원
		아)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복지부 파견 공무원
		자) 사회질서유지반	• 경찰청 파견 공무원
		차) 수색, 구조·구급반	•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파견 공무원
	3)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등 중앙행정기관 파견 공무원 •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국립공원공단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

1. 중앙대책본부는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중앙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재난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자연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별표 5] <개정 2019.5.27.>

사회재난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편성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행정안전부장관이 본부장인 경우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경우	
본 부 장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차 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총괄조정관	사회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대 변 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공무원	
통 제 관	사회재난 관리대책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사회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부대변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공무원	
담 당 관	사회재난 관련 대응 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사회재난 관리대책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근무인원	총 10+α+β+γ명			
실 무 반	실무반장 (1명)	· 사회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1) 상황관리 총괄반(9명)	가) 상황관리 총괄팀(3명)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업무 담당 공무원 3명	
		나) 수습상황 파악팀(6명)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공무원 6명	

2) 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 지원반	• 행정안전부 긴급생활 안정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나)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 파견 공무원
	다) 긴급 통신지원 반	• 행정안전부 긴급 통신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파견 공무원
	라) 시설피해 응급 복구반	• 행정안전부 시설피해 응급복구 업무 담당 공무원 •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파견 공무원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 복구반	• 산업통상자원부 파견 공무원
	바) 재난수습 홍보 반	• 행정안전부 재난수습 홍보업무 담당 공무원
	사)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 지원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자원 관리 및 자원봉사활동 업무 담당 공무원
	아) 교통대책반	• 국토교통부 파견 공무원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복지부 파견 공무원
	차) 사회질서 유지 반	• 경찰청 파견 공무원
	카) 수색, 구조·구급반	•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파견 공무원
3)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등 중앙행정기관 파견 공무원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4) 현장지원반(y)	• 행정안전부 공무원,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공무원 및 직원

비고

1. 중앙대책본부는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유형별 수습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반,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및 현장지원반을 탄력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3.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유형 및 근무상황에 따라 협업기능반을 상황관리총괄반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6]

해외재난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편성기준(제7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외교부장관이 본부장인 경우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경우
본 부 장	외교부장관		국무총리
차 장	외교부차관		외교부장관
총괄조정관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외교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외교부차관
대 변 인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외교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외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외무공무원
통 제 관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외교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외교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부대변인	대변인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외무공무원		대변인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외무공무원
담 당 관	재외국민보호 및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소속의 과장급 외무공무원(간사 겸직)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외교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근무인원	총 39+a 명		
실 무 반	실무반장 (1명)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간사 및 담당관 겸직)	
	1)상황관리 총괄반 (20+a명)	가) 상황관리 총괄팀 (5+a명)	- 외교부 소속 공무원 5명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 기타 소요 인력

		나) 중대본 회의 지원팀 (4+a명)	• 외교부 소속 공무원 4명 • 기타 소요 인력
		다) 국제협력팀 (4+a명)	• 외교부 소속 공무원 4명 • 기타 소요 인력
		라) 홍보팀 (3+a명)	• 외교부 소속 공무원 3명 • 기타 소요 인력
		마) 운영지원팀 (4+a명)	• 외교부 소속 공무원 4명 • 기타 소요 인력
	2) 현장지원반 (4+a명)	가) 현장 비상대책반[현장지휘본부]지원팀 (4+a명)	• 외교부 소속 공무원 4명 • 기타 소요 인력
	3) 협업기능반 (14+a명)	가) 관계 부처 협업 지원팀 (2+a명)	• 외교부 소속 공무원 2명 • 해외해난 대응 유관부처 연락관 • 기타 소요 인력
		나) 수색·구조·구호 지원팀 (2+a명)	• 외교부 소속 공무원 2명 • 국방부 소속 공무원 •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 경찰청 소속 공무원 •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 소방청 소속 공무원 • KOICA 소속 직원 • 기타 소요 인력
		다) 의료·방역지원팀 (2+a명)	• 외교부 소속 공무원 2명 •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 KOICA 소속 직원 • 기타 소요 인력
		라) 이송·귀국 지원팀 (2+a명)	• 외교부 소속 공무원 2명 •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 국방부 소속 공무원

			• 기타 소요 인력
		마) 신원 확인팀 (2+α명)	• 외교부 소속 공무원 2명 •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 경찰청 소속 공무원 • 기타 소요 인력
		바) 가족 지원팀 (2+α명)	• 외교부 소속 공무원 2명 •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 법무부 소속 공무원 • 기타 소요 인력
		사) 재난자원 지원팀 (2+α명)	• 외교부 소속 공무원 2명 •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 기타 소요 인력

비고

1. 중앙대책본부는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유형별 수습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황관리총괄반, 현장지원반 및 협업기능반을 탄력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3.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유형 및 근무상황에 따라 현장지원반 및 협업기능반을 상황관리 총괄반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u>행정안전부에</u> 설치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위하여</u> ----- ----- -----.
제5조(위임전결사항) ① (생 략) ② 위임전결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u>행정안전부</u> 위임전결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위임전결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부처의</u> -----.
제7조(중앙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재난 발생시 중앙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 (생 략) <u><신 설></u> ② (생 략)	제7조(중앙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 ----- -----. 1. 2. (현행과 같음) <u>3. 해외재난의 경우: 별표 6</u>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② (생 략)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과 관련된 <u>행정안전부</u>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관련 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 2. 3. (생략) ④ (생략) 제14조(중앙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u> 소속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19조(현장상황관리관 파견) ① · ② (생략) <u><신설></u> 제24조(재난상황의 보고 방법) (생략)	③ ----- ----- ----- -----. 1. ----- <u>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부처</u> ----- ----- ----- 2.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중앙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부처</u> ----- ----. 제19조(현장상황관리관 파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해외재난의 경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속대응팀을 파견할 수 있다.</u> 제24조(재난상황의 보고 방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

<신 설>

② 해외재난의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7조(비상근무) ① 중앙대책본부
를 운영하는 부처에서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